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 12. 이선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04. 12. 13

다. 상 정 일 자 : 2004. 12. 22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부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이 선 의원

나. 제안사유

-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 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군민의 건전문화생활과 정서함양 및 각종 문화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제고 (안 제2조)
- 관악합주단의 구성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단원을 구성한다. (안 제3조)
- 지휘자 선발은 정규음대를 졸업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안 제4조)
-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 제5조)
- 지휘자는 청소년 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안 제7조)
- 군수는 지휘자로서 품위를 손상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안 제8조)
-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0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고 건전문화 생활화로 군민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결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제4조(지휘자의 선발)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를 삽입하고,
- 제7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함.
- 제10조(단체육성)에 인건비, 수당은 지원하고, “운영비”는 삭제

6. 심사결과

“수정 의결”

7. 붙임 :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군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의 장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순군립청소년관악합주단(이하 “청소년관악합주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소년관악합주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창달
3.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
4.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
5. 정기발표회를 통하여 청소년관악합주단의 실력양성과 결속력 강화

제3조(구성) ① 청소년관악합주단은 지휘자 1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휘자 이외의 단원은 지휘자가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화순군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관악합주단 단원을 연합하여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지휘자의 선발) 지휘자는 정규음악대학을 졸업한 자 중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관악이나 지휘를 전공한 자 중에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단원의 임기) ①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지휘자 이외의 단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졸업시로 한다.

제6조(단원의 임무) ① 연습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화순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요청이 있을시 참가하여 공연하여야 한다.

③ 단원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다한다.

제7조(지휘자의 임무) ①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② 지휘자는 청소년관악합주단의 실력향상과 결속력 강화에 노력하고 단원의 지도에 책임을 진다.

제8조(지휘자의 해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휘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지휘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청소년관악합주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3. 제7조의 지휘자의 임부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제9조(공연활동) 청소년관악합주단은 연1회 정기 공연을 실시하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단원의 실력향상을 위해 수시공연을 한다.

제10조(단체육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휘자에게 인건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